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81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김재섭 · 김기웅 · 박수영
박수민 · 백종현 · 한지아
안철수 · 김미애 · 김용태
박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잘못된 기록이 발생할 경우 단순 정정 절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류가 증명서에 그대로 기재되는 사례가 있음.

실제로 시아버지와의 혼인신고가 잘못 기재되어 등본에 영구히 남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잘못된 기록이 계속 공시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등록부의 재작성

제108조의2(재작성의 신청) 제18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거나 이미 정정된 기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경우
2.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고된 경우
3. 그 밖에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08조의3(재작성의 승인요청) 제108조의2에 따라 재작성 신청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재작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8조의4(재작성의 승인) 제108조의3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은 가정 법원장은 재작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작성을 승인하고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작성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8조의5(재작성의 방법) 제108조의4에 따라 재작성을 승인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 승인의 대상이 된 해당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의6(기존 등록부의 폐쇄) 제108조의5에 따라 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기존의 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이 경우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의7(위임규정)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절차 등 등록부의 재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부에 기록이 이루어지거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2 등록부의 재작성</u> <u>제108조의2(재작성의 신청) 제18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거나 이미 정정된 기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u> <u>1. 신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경우</u> <u>2.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고된 경우</u> <u>3. 그 밖에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u> <u>제108조의3(재작성의 승인요청)</u> <u>제108조의2에 따라 재작성 신청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재작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u>
<u><신 설></u>	

<신 설>

제108조의4(재작성의 승인) 제108조의3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은 가정법원장은 재작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작성을 승인하고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작성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08조의5(재작성의 방법) 제108조의4에 따라 재작성을 승인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 승인의 대상이 된 해당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8조의6(기존 등록부의 폐쇄) 제108조의5에 따라 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기존의 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이 경우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08조의7(위임규정) 이 장에서

	<u>정한 것 외에 절차 등 등록부</u> <u>의 재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u> <u>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	--